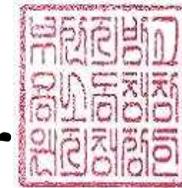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13조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내용		
김O진	98. 5. 2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알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지정 안내서 통지에 방문 불이행	2024. 7. 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경남 창원시 진해대로 943 (이하 생략)

- 공고기간 : 2024. 7. 9.~2024. 7. 23.(15일간)
-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미정(전화 055-239-53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